

## 「2026년 경남형 청년친화기업 지원사업」

# 참여기업 모집 공고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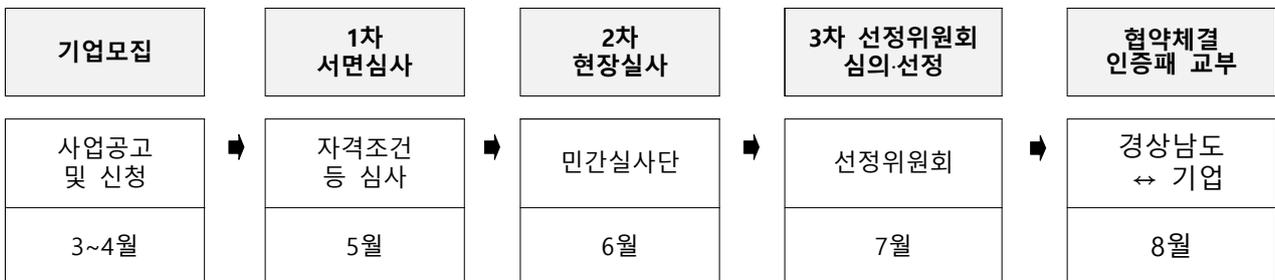
경상남도에서는 도내 우수 중소기업으로서 청년이 일하고 싶은 고용 환경을 갖춘 중소기업을 「경남형 청년친화기업」으로 선정하여, 청년 채용확대 및 일생활 균형 기업문화 확산을 유도하고자, 금년도 참여 기업 추가 모집을 아래와 같이 공고하오니, 관심 있는 기업의 많은 참여를 바랍니다.

2026. 3. 11.

## 경 상 남 도 지 사

### 1. 경남형 청년친화기업 지원사업

- 도내 중소기업 중 청년일자리 창출 확대, 일생활균형 조직문화, 고용 안정성, 복지혜택 등이 우수한 중소기업을 「경남형 청년친화기업」으로 선정하여, 2년 간 지원하는 사업
- 인증기관 : 경상남도
- 선정절차



\* 현장실사 시, 민간전문가(청년평가단 포함) 참여

\* 상황에 따라 선정절차 일정은 변동될 수 있음

## 2. 신청·접수

- 신청기간 : 2026. 3. 11.(수) ~ 4. 22.(수)
- 신청대상 : 경상남도 소재(본사) 중소기업
- 제외대상
  - 고용보험 미가입 사업장
  - 국내기업의 지사
  - 정부 지원금을 부정하게 신청하거나 지급받은 사업장(최근 5년 이내)
  - 고용노동부장관이 명단 공개한 상습 임금체불 사업장
  - 기타 경상남도지사가 사업 참여에 부적합하다고 판단하는 사업장

## 3. 심사·선정

### ○ 선정방법

| 구 분            | 평가방식   |
|----------------|--|
| 1차 서면심사        |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○ 절대평가 : 신청서 및 증빙서류에 의한 정량적 평가</li> <li>○ 평가방법 : 경상남도 산업인력과 서면심사</li> <li>○ 평가배점(100점) : 기업안정성, 임금수준, 고용안정성 등</li> <li>○ 선 정 : 선정목표의 1.5배 선발</li> </ul> |
| 2차 현장실사        |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○ 상대평가 : 서면심사 통과기업 대상 증빙서류에 따른 정성적 평가</li> <li>○ 평가방법 : 현장실사단 기업방문 면담 및 현장점검</li> <li>○ 평가배점(100점) : 근무환경 및 일·생활균형 제도 운영 실태 등</li> </ul>                |
| 3차 선정위원회 심의및선정 |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○ 상대평가 : 위원회 개최를 통한 정성적 평가 후 의결</li> <li>○ 평가방법 : 선정심사위원회 위원 의결</li> <li>○ 선 정 : 서면심사(100점) + 현장실사(100점) 총점 상위 20개 기업을 선정 위원 의결로 선정</li> </ul>          |

- 경남 청년친화기업 모델 : 세부기준 미달시 제외

| 구 분        | 세부기준   | 비고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
|------------|--|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|
| ① 신입 초임임금  | 경상남도 생활임금 이상   | * 최근 1년<br>④+⑤+⑥<br>지표 합계 6개 이상 |
| ② 신규 채용청년  | 5명 이상 채용(전체근로자 50명 이하, 3명 이상) * 39세 이하   |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
| ③ 청년근로자 비율 | 전체 근로자 대비 청년 35% 이상  |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
| ④ 일생활균형제도  | 육아휴직, 육아지원(수유실, 물품, 돌봄 등), 결혼·출산지원(물품, 축하금 등), 유연근무(재택, 원격, 시차출근, 근로시간단축), 특별휴가(기념일 조기퇴근, 장기재직휴가 등), 경력단절여성 채용 등 |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
| ⑤ 조직문화혁신제도 | 신입 조직적응 교육(온보딩, 청년간담회 등), 청년친화 조직문화(1대1 멘토링, 영화, 야구관람, 문화쿠폰, 간식제공 등)   |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
| ⑥ 복지지원제도   | 동호회, 교육훈련, 해외연수, 기숙사, 카페테리아 등  |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

○ 심사배제 대상

- 공정거래법 위반으로 고발, 과징금 처분을 받은 기업
- 최근 2년 이내 ‘산재사망사고’ 발생 기업,
- 공고일 현재 국세 및 지방세 체납기업
- 기타서비스업(오락장 운영업, 사행시설 및 관리 및 운영업) 등 지원 부적합 판단 기업 [참고 1]
- 최근 2년간 임금체불 등 근로기준법 위반으로 벌금 또는 과태료를 부과 받은 기업
- 법정 보장제도(육아휴직, 성희롱 예방 등) 부재 기업
- 신용평가등급이 C이하(또는 최저등급)인 기업
- 재무제표 확인서 상 자본잠식 상태인 기업

○ 심사기준 및 배점

가. 1차 서면심사 (100점)

| 구 분     |           | 평가항목   | 배점  |
|---------|-----------|--|-----|
| 합 계     |           |  | 100 |
| 기업 기본정보 |           | 기업정보 및 구비서류 일치여부   | 10  |
| 기업안정성   |           | 신용평가등급   | 10  |
|         |           | 매출액 성장률(자본잠식기업 여부)   | 10  |
| 고용 창출   |           | 전체 직원 중 청년 비중  | 10  |
| 산업재해율   |           | 최근 2년간 산업재해율   | 10  |
| 임금 수준   | 초임임금      | 신입사원 초임임금 수준   | 5   |
|         | 임금 상승률    | 최근 2년간 임금상승률   | 5   |
|         | 성과급       | 기업별 성과급 지급 수준  | 5   |
|         | 부가급여 (가점) | 교통비, 정액급식비, 가족수당 등 지급 여부 등 (개당 1점)   | 3   |
| 고용 안정성  | 청년고용 증가율  | 최근 2년간 청년 고용증가율 및 증가인원   | 10  |
|         | 청년정규직     | 채용 청년 중 정규직 비중   | 10  |
|         | 청년 고용유지율  | 청년근로자의 1년간 평균 고용유지율  | 15  |
| 기타      | 추가사항 (가점) | 비제조업일 경우   | 1   |
|         |           | 공공기관 인증서(개당 1점)  | 2   |
|         |           | 경남도 일자리관련 사업 참여 여부 (고용우수기업, 기업 채용 연계 청년일자리 사업 등) ※ 단, 국비인건비 지원사업은 제외(1개 이상 1점) | 1   |

## 나. 2차 현장실사 (100점)

| 구 분      |      | 평 가 항 목  | 배점  |
|----------|------|--|-----|
| 합 계      |      |  | 100 |
| 기업 성장잠재력 |      | 경영자 인터뷰 및 기업소개 프리젠테이션을 통한 기업 성장잠재력 파악  | 20  |
| 근로환경     |      | 기업 주위 환경 확인 및 작업장 내 근로 환경 확인(위험성 여부 및 쉼터 공간 등 확인)  | 20  |
| 조직문화혁신   |      | 온보딩프로그램, 청년간담회, 파티운영 등   | 10  |
|          |      | 청년 친화적인 조직문화 정착 노력, 노사 상생 및청년 친화를 위한 인터뷰(사업주 및 재직자 인터뷰)  | 10  |
| 일·생활균형   |      | ① 육아 지원제도 운영실적(최근 2년 휴직현황)<br>② 경력단절여성 채용실적(최근 2년 신규채용현황)<br>③ 유연근무제 운영실적(재택, 원격, 시차출근 등)<br>④ 휴가 지원실적 등(특별휴가, 기념일 조기퇴근 등) | 20  |
|          |      | 육아휴직 복귀자 인터뷰   | 10  |
| 복지제도     | 자기개발 | 교육비, 교육제도, 사내 동호회 운영, 해외연수 등 자기개발비 지원 여부   | 5   |
|          | 복리후생 | 기숙사, 통근차량, 카페테리아, 휴게시설 유무, 체육시설, 육아시설 등 직원 복리후생 지원 여부  | 5   |

## 4. 제출서류

### 가. 참여 신청서

#### ○ 제출 서류

- 청년친화기업 선정지원사업 신청서 [서식 1]
- 사업자등록증 사본 및 법인등기부등본
- 중소기업 확인서[중소기업현황정보시스템(sminfo.mss.go.kr) 발급]
- 국세 및 지방세완납증명서[홈택스 사이트(www.hometax.go.kr) 확인]
- 재무제표확인서(재무상태표, 손익계산서 포함, '24~'25년 비교자료 필수)

- 최근 3년간 고용보험가입자명부[고용보험 사이트(www.ei.go.kr) 확인] 예)'24년·'25년 각 1건(1.1.~12.31.) 및 '26년 1건(1.1.~공고일 이전월까지) 제출

※ 외국인노동자 별도 표시 필수

- 산업재해율 확인서(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확인)
- 신용평가등급 증빙자료(나이스평가, 한국기업데이터, 이크레더블 등)
- 취업규칙(파일로만 제출)
- 재직기간 1년미만 청년의 급여대장 및 급여지급 명세서 (최근 1년 간, 채용 1년차에 한함)
- 최근 3년간 직급별 연봉기준표
- 성과급 지급 기준 및 지급 내역서
- 부가급여 지급 기준 및 관련 증빙자료
- 재직 중인 청년들의 근로계약서 사본
  - ※ 공공기관 인증서(가점) 예) 고용우수기업, 스타기업, 청년친화강소기업 등

○ 신청방법 : 제출서류(서식 1의 신청서와 관련 증빙서류)를 e-메일, 우편(방문)으로 모두 제출

- (e-메일) jjuya2822@korea.kr
- (우편 또는 방문) 경상남도 창원시 의창구 중앙대로 300  
경남도청 산업인력과(본관 1층)

나. 서면심사 후

- 조직문화혁신제도, 청년친화문화제도 운영 기준 및 관련 증빙자료 (직장적응교육, 청년간담회, 1대1 멘토링, 영화야구관람 등)
- 일·생활균형제도 운영 기준 및 관련 증빙자료(육아지원제도, 경력단절여성 채용, 유연근무, 특별휴가 등)
- 교육비 등 자기개발비 지원 기준 및 관련 증빙자료

- 복지후생 지원 기준 및 관련 증빙자료(동호회, 자기개발비, 해외 연수, 기숙사, 어린이집, 카페테리아 등 사진 포함)
- 경남도 일자리관련 사업 참여 인증서 또는 확인증
- 기타 평가항목 증빙서류

○ 제출방법 : 우편 또는 방문으로 제출

- (우편 또는 방문) 경상남도 창원시 의창구 중앙대로 300  
경남도청 산업인력과(본관 1층)

○ 제출기한 : 서류심사 결과 발표 후 5일 이내(주말 제외)

나. 문의처 : 경상남도 산업인력과(☎055-211-3563)

## 5. 인증기간 및 지원내용

○ 인증기간 : 2년 (선정 다음연도 1월 1일부터)

○ 지원내용 : (공통) 복지비, (선택) 인건비와 시설개선비 중 택일

| 구분                   | 지원 내용  | 비고         |           |    |           |       |     |           |       |     |           |       |     |           |       |     |     |
|----------------------|--|------------|-----------|----|-----------|-------|-----|-----------|-------|-----|-----------|-------|-----|-----------|-------|-----|-----|
| 근로자 복지지원 (공통)        |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· 복지비 : 근로자 복지지원금                            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- 기업당 최대 20백만원(기업 자부담 10%)</li> <li>- 상시근로자 수 대비 차등 지원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. 50인 미만 : 10백만원</li> <li>. 50~100인 미만 : 15백만원</li> <li>. 100인 이상 : 20백만원</li> </ul> </li> </ul> </li> <li>※ 2회 지원 : 1, 2차년도 각 1회</li> </ul>   | 산업인력과      |           |    |           |       |     |           |       |     |           |       |     |           |       |     |     |
| 육아휴직대체 청년인턴 지원 (인건비) |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· 육아휴직대체인턴 : 육아휴직자 대체 청년인턴 지원</li> <li>- 경남도 생활임금 * 12개월</li> <li>- 기업당 최대 3명</li> <li>※ 청년인턴 임금 : 경상남도 생활임금 적용('26년 월 2,530,990원)</li> </ul>   | 산업인력과      |           |    |           |       |     |           |       |     |           |       |     |           |       |     |     |
| 추가고용 장려 (인건비)        |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· 추가고용장려금 : 청년인턴 정규직 전환 후 6개월간</li> <li>- 월 50만원 * 6개월</li> <li>- 기업당 최대 3명</li> </ul>  | 산업인력과      |           |    |           |       |     |           |       |     |           |       |     |           |       |     |     |
| 근무환경개선 지원            |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· 근무환경개선금 : 청년친화시설 개선 지원</li> <li>- 기업당 최대 2,000만원, 1회 지원</li> <li>※ 청년친화기업으로 선정 협약 후 다음 연도내 집행</li> </ul>  | 산업인력과      |           |    |           |       |     |           |       |     |           |       |     |           |       |     |     |
| 경남도 일반용역 적격심사 가점 적용  |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· 도 일반용역 적격심사 가점 적용 : 0.4~1.0점 적용</li> <li>- 청년 고용비율 증가율 또는 신규 청년 고용 수에 따라 차등</li> </ul> <table border="1" style="margin-left: 20px;"> <thead> <tr> <th>청년고용비율</th> <th>신규 청년 고용수</th> <th>배점</th> </tr> </thead> <tbody> <tr> <td>40% 이상 증가</td> <td>4인 이상</td> <td>1.0</td> </tr> <tr> <td>30% 이상 증가</td> <td>3인 이상</td> <td>0.8</td> </tr> <tr> <td>20% 이상 증가</td> <td>2인 이상</td> <td>0.6</td> </tr> <tr> <td>10% 이상 증가</td> <td>1인 이상</td> <td>0.4</td> </tr> </tbody> </table> | 청년고용비율     | 신규 청년 고용수 | 배점 | 40% 이상 증가 | 4인 이상 | 1.0 | 30% 이상 증가 | 3인 이상 | 0.8 | 20% 이상 증가 | 2인 이상 | 0.6 | 10% 이상 증가 | 1인 이상 | 0.4 | 회계과 |
| 청년고용비율               | 신규 청년 고용수  | 배점         |           |    |           |       |     |           |       |     |           |       |     |           |       |     |     |
| 40% 이상 증가            | 4인 이상  | 1.0        |           |    |           |       |     |           |       |     |           |       |     |           |       |     |     |
| 30% 이상 증가            | 3인 이상  | 0.8        |           |    |           |       |     |           |       |     |           |       |     |           |       |     |     |
| 20% 이상 증가            | 2인 이상  | 0.6        |           |    |           |       |     |           |       |     |           |       |     |           |       |     |     |
| 10% 이상 증가            | 1인 이상  | 0.4        |           |    |           |       |     |           |       |     |           |       |     |           |       |     |     |
| 노무컨설팅 지원             |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· 찾아가는 도민 노무사제 지원 : 노동상담, 권리구제, 컨설팅 등</li> <li>- 청년친화기업 및 소속 재직 근로자</li> </ul>  | 사회경제노동과    |           |    |           |       |     |           |       |     |           |       |     |           |       |     |     |
| 중앙부처 및 도 사업 선정 우대    | · 고용우수기업 선정 우대 : 가점 부여   | 산업인력과      |           |    |           |       |     |           |       |     |           |       |     |           |       |     |     |
|                      | · 해외마케팅 참가기업 선정 우대 : 가점(+5)부여  | 국제통상과      |           |    |           |       |     |           |       |     |           |       |     |           |       |     |     |
| 금융우대 혜택              |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· 기업대출 시 우대 금리 적용                            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- 농협 : 일반기업 대비 최고 1.5% 우대</li> <li>- 경남은행 : 일반기업 대비 최고 1.7% 우대</li> </ul> </li> </ul>  | 농협<br>경남은행 |           |    |           |       |     |           |       |     |           |       |     |           |       |     |     |
|                      | · 도 중소기업육성자금 : 자금유자 이차보전 우대 최대 0.5%p 추가 지원   | 경제기업과      |           |    |           |       |     |           |       |     |           |       |     |           |       |     |     |
|                      | · 경남신용보증재단 신용보증 수수료 : 산정보증요율 0.3% 감면   | 소상공인정책과    |           |    |           |       |     |           |       |     |           |       |     |           |       |     |     |

## 6. 업체 선정/통보 : 2026년 7월(예정) / 최종 선정 후 개별 통보

## 7. 유의사항

- 신청서 등의 허위 기재 또는 기재 착오, 기간 내 구비서류 미제출 등으로 인한 불이익은 신청기업의 책임으로 함.
  - 신청기업은 자격요건 적합 여부와 노동 관련 법(근로기준법 등) 및 환경 관련 법 위반 문제로 해당 노동지청과 사법기관에 고발되었던 사실과 처분내용이 있었는지 여부를 반드시 사전 확인하여 신청하시기 바라며, 제출서류는 반환하지 않음.
  - 신청서나 각종 증명서의 기재 내용이 사실과 다른 사항이 추후 확인될 경우 심사 탈락, 인증 취소 및 지원금 반환 조치 함.
  - 자가 및 임차 생산기반시설이 없는 기업체의 경우 인증이 제한될 수 있음.
- ※ 그 밖에 자세한 사항은 경상남도 산업인력과 (☎055-211-3563)으로 문의

**서식 1**

**청년친화기업 신청서**

**경남형 청년친화기업 인증 신청서**

1. 업체현황

|                     |   |        |      |  |
|---------------------|---|--------|------|--|
| 업체명                 |   | 대표자    | 성명   |  |
| 홈페이지                |   |        | 생년월일 |  |
| 주소(본사)              |   | 설립일자   |      |  |
| 사업자등록번호             |   | 법인등록번호 |      |  |
| 대표업종<br>※ 해당업종에 √표시 | <input type="checkbox"/> 정보통신업 <input type="checkbox"/> 제조업 <input type="checkbox"/> 건설업 <input type="checkbox"/> 서비스업 <input type="checkbox"/> 문화컨텐츠 <input type="checkbox"/> 기타 |        |      |  |
| 주요생산품명<br>또는 사업내용   |   |        |      |  |
| 자본금*                | 백만원   | 연간매출액* | 백만원  |  |
| 담당부서                |   | 전화번호   |      |  |
| 담당자                 |   | E-mail |      |  |

\* 자본금, 연간매출액 : 공고일 기준 전년도 12월 31일 기준

2. 기본 자료

| 신입초임임금<br>(재직1년 미만) |         | 정규직 근로자 수 |                | 일생활<br>균형제도 | 조직문화<br>혁신제도 | 복지지원제도 |
|---------------------|---------|-----------|----------------|-------------|--------------|--------|
|                     |         | 전체        | 청년<br>(18~39세) |             |              |        |
| 합계                  |         |           |                | 예)          | 예)           | 예)     |
| 기본급                 |         |           |                | - 육아휴직      | - 온보딩        | - 동호회  |
| 수당                  | 초과수당 제외 |           |                | - 유연근무      | - 멘토링        | - 교육훈련 |
|                     |         |           |                | - 특별휴가 등    | - 영화관람 등     | - 카페 등 |

3. 부가급여 추진 현황(해당 부분에 체크)

|    |         |         |             |         |
|----|---------|---------|-------------|---------|
| 종류 | ① 교통비   | ② 정액급식비 | ③ 가족수당      | ④ 복지포인트 |
| 여부 |         |         |             |         |
| 종류 | ⑤ 문화바우처 | ⑥ 스톡옵션  | ⑦ 모다드림 청년통장 | ⑧ 기타    |
| 여부 |         |         |             |         |

⑧기타 내용서술( )



## 서식2

# 청년친화기업 신청기업 증빙서 자체점검 목록

### 1. 참여 신청서 제출 목록

\* 반드시 연번(증빙) 편철 순서로 확인 및 제출

| 연번<br>(증빙) | 내 용   | 확인<br>여부 |
|------------|---|----------|
| 1          | 지원신청서[서식 1]   |          |
| 2          | 사업자등록증 사본   |          |
| 3          | 법인등기부등본   |          |
| 4          | 중소기업 확인서  |          |
| 5          | 국세 완납증명서  |          |
| 6          | 지방세 완납증명서   |          |
| 7          | 재무제표확인서(재무상태표, 손익계산서 포함)<br>- '24년, '25년 각 1부씩  |          |
| 8          | 최근 3년간 고용보험가입자명부[고용보험 사이트(www.ei.go.kr) 확인]<br>- '24년·25년 각 1건(1.1.~12.31.)<br>- '26년 1건(1.1.~공고일 전월) 제출<br>※ 외국인노동자 별도 표시 필수 |          |
| 9          | 산업재해율 확인서   |          |
| 10         | 신용평가등급 증빙자료(참고 2)   |          |
| 11         | 취업규칙(전자파일로 이메일제출)   |          |
| 12         | 재직기간 1년미만 청년의 급여대장 및 급여지급 명세서<br>- 최근 1년 간, 신입채용 1년차에 한함  |          |
| 13         | 최근 3년간 직급별 연봉기준표  |          |
| 14         | 성과급 지급 기준 및 지급 내역서  |          |
| 15         | 부가급여 지급 기준 및 관련 증빙자료  |          |
| 16         | 재직 중인 청년들의 근로계약서 사본   |          |
| 17         | 비제조업종 여부  |          |
| 18         | 공공기관 인증서(건수)  |          |
| 19         | 경남도 일자리관련 사업 참여 여부  |          |

## 2. 서면심사 후 제출 목록

\* 반드시 연번(증빙) 편철 순서로 확인 및 제출

| 연번<br>(증빙) | 내 용   | 확인<br>여부 |
|------------|---|----------|
| 1          | 조직문화혁신제도, 청년친화문화제도 운영 기준 및 관련 증빙자료<br>(직장적응교육, 청년간담회, 1대1멘토링, 영화야구관람 등) |          |
| 2          | 일·생활균형제도 운영 기준 및 관련 증빙자료<br>(육아지원제도, 경력단절여성 채용, 유연근무, 특별휴가 등)           |          |
| 3          | 교육비 등 자기개발비 지원 기준 및 관련 증빙자료<br>※ 취업규칙에 근거한 교육 지원 제외                     |          |
| 4          | 기숙사 등 복지후생 지원 기준 및 관련 증빙자료(사진 포함)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         |
| 5          | 경남도 일자리관련 사업 참여 인증서 또는 확인증<br>※ 단, 지역주도형일자리 사업 등 국비 인건비 지원사업은 제외        |          |
| 6          | 기타 평가항목 증빙서류  |          |

**참고 1**

**경남형 청년친화기업 심사 배제대상 업종**

| 업종분류                        | 업종                   | 분류코드  |
|--------------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-------|-------|
| 1. 숙박 및 음식점업                | 가. 여관업               | 55112 |
|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나. 그외 기타 숙박업         | 55909 |
|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다. 일반유희 주점업          | 56211 |
|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라. 무도유희 주점업          | 56212 |
|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마. 기타 주점업            | 56219 |
|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바. 비알콜 음료점업          | 56220 |
| 2. 부동산업 및 임대업               | 가. 주거용 건물 임대업        | 68111 |
|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나. 비주거용 건물 임대업       | 68112 |
|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다. 기타 부동산 임대업        | 68119 |
|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라. 주거용 건물 개발 및 공급업   | 68121 |
|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마. 비주거용 건물 개발 및 공급업  | 68122 |
|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바. 기타 부동산 개발 및 공급업   | 68129 |
| 3. 예술, 스포츠 및 여가관련 서비스업      | 가. 골프장 운영업           | 91121 |
|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나. 노래연습장 운영업         | 91223 |
|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다. 무도장 운영업           | 91291 |
|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라. 기타 gambling 및 베팅업 | 91249 |
| 4. 협회 및 단체, 수리 및 기타 개인 서비스업 | 가. 이용업               | 96111 |
|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나. 두발미용업             | 96112 |
|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다. 피부미용업             | 96113 |
|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라. 기타미용업             | 96119 |
|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마. 욕탕업               | 96121 |
|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바. 마사지업              | 96122 |
|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사. 기타 미용관련 서비스업      | 96129 |

\* 비고 : 업종분류, 업종, 분류코드는 「통계법」 제22조에 따라 통계청장이 고시한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다.

## 참고2

# 신용평가등급 증빙자료 평가방법 안내

### ○ 평가방법

-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(제4조제1항),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(제335조의3)에 따라 신용정보(평가)업자가 발급한 공고기간 내 유효한 신용평가서
- 신용평가서가 없는 경우, 최근년도 재무결산자료를 신용정보업체에 의뢰해 평가 실시하여 제출 ※ **반드시 기업신용등급이 적시되어야 함.**

### ○ 신용평가등급에 따른 경영상태 평가기준

| ①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| ② 기업어음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| ③ 기업신용평가등급                  | 청년친화기업 심사대상 여부 | 비고 |
|---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-|----|
| AAA              |                   | ①의 AAA에 준하는 등급              | 대상             |    |
| AA+, AA°, AA-    | A1                | ①의 AA+, AA°, AA-에 준하는 등급    |                |    |
| A+, A°, A-       | A2+, A2°, A2-     | ①의 A+, A°, A-에 준하는 등급       |                |    |
| BBB+, BBB°, BBB- | A3+, A3°, A3-     | ①의 BBB+, BBB°, BBB-에 준하는 등급 |                |    |
| BB+, BB°         | B+                | ①의 BB+, BB°에 준하는 등급         |                |    |
| BB-              | B°                | ①의 BB-에 준하는 등급              |                |    |
| B+, B°, B-       | B-                | ①의 B+, B°, B-에 준하는 등급       |                |    |
| CCC+ 이하          | C 이하              | ①의 CCC+에 준하는 등급 이하          | 비대상            |    |

주1) 심사대상 제외 : 신용평가등급이 투기적(highly speculative) 등급인 경우

- ①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: CCC+ 이하
- ② 기업어음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: C 이하
- ③ 기업신용평가등급 : ①, ②에 준하는 등급

□ 복지지원금

| 지원유형     | 분류   | 지원가능 예시                        | 유의사항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
|----------|--|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|
| 확인 사항    | 1. 복지 관련 지출은 근로자에 한해 지원함. (거주지 경상남도 내)<br>2. 개인에게 지급되는 지원금은 지출관련 내부품의, 회계정산서로 증빙되어야 함.<br>3. 모든 지원금은 임금에 포함하여 지급되어서는 안됨.<br>4. 현금성 지급은 인정하지 않으며, 반드시 계좌이체로 항목을 명시하여 지급하여야 함.<br>5. 상여금은 통상임금에 포함되므로 지원되지 않음.<br><b>6. 복지 관련 지출은 회사내규에 명시된 경우에 한해 지원함.</b><br>7. 복지관련 지출시 구비서류 : 회사내규 |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
| 일생활 균형   | 축하금-기념일  | 졸업·결혼·출산·생일 등                  | 기념일 증빙서류 첨부                        |
|          | 휴가   | 휴가비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전년대비 휴가비 상향 및 내규로 정해지는 경우 가능       |
| 복지 지원    | 건강   | 건강검진비                          | 검진확인증 첨부                           |
|          | 자기개발   | 자기개발비                          | 교육이수증 첨부                           |
|          | 주거독립   | 이사비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이사비용 증빙                            |
|          | 기숙사 운영   | 기숙사 임대료                        | 임대보증금은 불가<br>월 임대료는 가능 - 계약서 첨부    |
|          | 복지포인트  | 경남사랑상품권                        | 회사내규로 정해지는 경우 가능                   |
| 조직문화 활성화 | 교육 운영  | 강사료, 교재비 등<br>- 직무교육<br>- 신입교육 | - 간식비, 식음료는 불가<br>- 영수증 첨부         |
|          | 동호회  | 활동비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- 증빙가능 항목만 가능, 영수증 첨부<br>(식음료는 불가) |

## □ 근무환경개선금

| 지원유형 | 분류  | 지원가능 예시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유의사항   |
|------|---|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|--|
| 확인사항 | * 시설개선을 위해 구입한 물품은 시설이 개선되는 공간내에 비치되어 있어야함.<br>증빙자료 사진 첨부 |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 |
| 시설개선 | 시설 개선   | 사무실 리모델링<br>(외관포함)                 | 세부 공사 견적서 및 비교견적서 첨부   |
|      |   | 휴게실 리모델링                           | 세부 공사 견적서 및 비교견적서 첨부   |
|      |   | 체력단련실 리모델링                         | 세부 공사 견적서 및 비교견적서 첨부   |
|      | 가전<br>(사무실)   | 공기청정기, 에어컨,<br>선풍기, 컴퓨터 등          | 제품구입 명세서 첨부  |
|      | 가전<br>(휴게실)   | 커피머신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* 커피<br>- 커피머신(개별구매 또는 계약렌탈 가능)<br>- 캡슐 또는 원두 (계약에 의해<br>배송받는 경우 가능) 개별적으로<br>구매하는 경우는 인정하지 않음 |
|      |   | 냉장고, 정수기,<br>안마의자, 게임기,<br>의류관리기 등 | * TV - 휴게실만 인정<br>(회의실, 사무실 비치는 불인정)   |
|      |   | 테이블, 소파 등                          | 제품구입 명세서 첨부  |
|      |   | 사내도서관용 도서구입                        | 구입도서 목록 첨부   |
|      | 기구<br>(체력단련실)   | 런닝머신 등 운동기구                        | 제품구입 명세서 첨부  |